

보존기간 : 3년	전국24시장비콜 정보망 서비스이용 약관	개정:
1. 총칙	<p>전국24시장비콜(이하'사'라한다)는 화주(이하'화'라한다)와 장비(차주)(이하'차'라한다)에게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장비(차주)'는 '사'와 관계 유지를 위해 정보망서비스이용 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고 약관을 준수하며 '사'는 화물정보망서비스이용 고지 및 통지의무를 수행한다. '사'·'화'·'장비(차주)'는 어떤 경우에도 약관내용을 준수하며 불이행시 약관내용대로 처리한다.</p> <p>가. '장비(차주)'는 매월 정보망서비스이용료를 무료로한다 (차주결정)</p> <p>나. '사'의 서버에 장애를 주거나 공정 배차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및 루팅, 변형, 구형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전국24시장비콜 정보망서비스 이용을 90일이상 정지한다.</p> <p>다. '장비(차주)'는 '사'가 제공하는 어플 및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므로, '사'의 스티커를 등록일 기준 20일 이내에 본인이 관할구청에 신고 후 부착하기로 한다.</p> <p>라. 주선허가증(카고크레인경우)을 미등록한 '화'와 '장비(카고크레인경우)'는 알선 및 주선,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수취했을 경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한다.</p> <p>마. '장비(차주)'는 해지시 '사'에게 신고 후 정보망서비스이용신청서 및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스마트폰 아이디를 배정받아 사용한다.</p> <p>바. '사'가 임명한 관리자는 '장비(차주)'의 스티커 미부착시 부착을 종용할 수 있다. 차량도색 및 교체시 15일전 사고시 '사'에 5일 이내 신고후 스티커를 교부받는다.</p> <p>사. '화'와 '장비(차주)'의 , PC, 스마트폰 정보망서비스 이용이 전기공급 및 서버장애 또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p> <p>아. '사'는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화'와 '장비(차주)'의 모든 통화내용을 녹취하며 분쟁시 '사'가 '화'와 '장비(차주)'의 녹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p> <p>자. '장비(차주)'는 작업장 근접오더 검색, 선택, 장비분실 방지, 작업과적(작업 또는 장비 위치)의 문의, 확인 등을 위해 '사'가 GPS정보를 이용하거나 '화'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장비(차주)'는 작업 할 때 반드시 등록 휴대폰을 소지하여 위치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장비(차주), '화주'는 등록시 유효한 주선사업허가증(카고크레인경우)을 '사'에게 제출하며, 주선허가증 주기적 신고일에 신고, 갱신한 주선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p>	
2. 등록조건	<p>가. '장비(차주)'는 '사'의 스티커를 등록일 기준 20일 이내에 본인이 관할구청에 신고 후 부착하기로 한다.</p> <p>나. '사'는 '장비(차주)'의 스티커부착확인율 의로할 수 있으며, '사'가 요청시 '장비(차주)'는 스티커부착사진을 전송한다. 전송거부시 미부착으로 본다.</p> <p>다. 장비(차주)간 정보교류 및 차량사고나 재난시 장비(차주)간 구호가능, 운송요금회포, 작업장부실관리, 고객불만족관리, 차량도난방지를 한다.</p> <p>라. '장비(차주)'는 '사'가 수면, 주차, 샤워를 할 수 있는 휴게실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사'가 식별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예정)</p>	
3. 스티커부착	<p>가. '화'의 정보망서비스이용료는 선납이므로 CMS출금계좌 또는 차주 예치금(가상계좌)에서 자동인출 한다. 인출시 '사'에 등록되어 있는 '차'의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는 정보망서비스이용료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페이지 에서 직접 출력한다.</p> <p>나. CMS출금계좌를 통해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차'는 '사'에게 통지 없이 CMS출금계좌를 변경하거나 통장해지시 화물정보망 서비스이용을 정지한다.</p>	
4. 정보망서비스이용료	<p>가. '화'와 '장비(차주)'는 '사'에게 본인이 본점 1811-8008으로 그룹방 해지를 요청한다.</p> <p>나. '화'와 '차'는 해지시 정보망서비스이용료를 모두 정산 완료 후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다. '사'에게 해지신청서 접수 확인 후 정보망서비스이용료 자동 인출이 정지되며, 이를 불이행시 정보망서비스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p> <p>라. '화'와 '차'는 언제든지 정보망서비스이용중지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사'는 '차'의 정보망서비스이용료 차액금을 10일 이내에 환불한다.</p> <p>마. '사'는 '화'와 '차'에게 어플 및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사'는 '화'와 '차'에 서로간 통보 후 정보망서비스이용을 조건없이 정지할 수 있다.</p>	
5. 해지 및 어플 사용중지/무전기	<p>가. '사'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화'와 '장비(차주)'는 배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p> <p>나. 오더등록시 일정입력은 필수항목이며, '화'는 법령에 위배되는 작업을 표시할 수 없다. 만일 '화'가 '사'에 불법작업을 알리지 않고 오더등록 요청한 경우 '사'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최대 이하'로 표시 처리하며, 이때 '화'와 '장비(차주)'는 정확한 작업내용을 통보하고 확인할 의무를 지며 '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p> <p>다. '장비(차주)'는 배차받은 작업일정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배차는 현위치에서 근거리 우선하며 장거리 배차를 후순위로 한다.</p> <p>라. '장비(차주)'는 '화'에게 장거리 이동에 대한 회차비를 요구할 수 없다. 작업 대기 및 작업지연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장비(차주)'와 '화'가 합의 조정한다.</p> <p>마. '장비(차주)'는 장애물 및 중량초과작업을 '화'와 확인하며 문제 발생시 '장비(차주)'와 '화'가 해결한다. '사'에게는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p> <p>바. 스마트폰 하루 배차건수는 취소건 포함하여 총3건입니다.</p>	
6. 정보망서비스이용확인/의무	<p>가. '사'는 '화'와 '장비(차주)'(카고크레인경우)에게 알선료 및 수수료 받는다. 카고크레인경우 주선허가증 미취득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p> <p>나. '화'와 '장비(차주)'는 운송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 양자가 합의 후 결정하며 송금 수수료는 입금자가 부담한다.</p>	
7. 운송료/장비중개수수료	<p>가. '장비(차주)'의 예치금잔액이 선착불건 오더 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배차신청 할 수 없다.</p> <p>나. '장비(차주)'가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화'가 수령계좌를 등록하면 선착불수수료 자동정산 처리규정에 동의하고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보며 세부내용은 처리규정에 따른다.</p> <p>다. 자동정산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자동정산 처리규정에 '화'와 '장비(차주)'의 부담으로 정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p>	
7-1. 선착불 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p>가. '화'와 '장비(차주)'는 운송료수수료 사고시 '사'에게 배상을 전가할 수 없으며,작업장 관련 분쟁 발생시 '사'는 '화'와 '장비(차주)'의 정보망서비스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p> <p>나. 사고 발생시 '화'와 '장비(차주)' 서로가 해결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는 '화'와 '장비(차주)'의 공문에 의한 협조 요청시 주소 및 전화번호, 스마트폰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화'와 '장비(차주)'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p>	
8. 복지	<p>가. '장비(차주)'는 '화'가 요청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며, '화'는 선착불 수수료 자동정산 금액 및 주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나. '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화'와 '장비(차주)'의 사업자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단, '화'나 '장비(차주)'가 '사'에게 등록한 정보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각자가 진다.</p>	
9. 금융정보거래	<p>가. '사'는 본 정보망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 발생시 관할 경찰서 및 법원은 '사'의 행정지역으로 정한다.</p> <p>나. 본 정보망서비스이용신청서는 전국24시장비콜 정보망서비스이용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p> <p>다. '화'와 '장비(차주)'의 등록된 정보 변경으로 서류 재 접수시 개인정보유출 및 보안상 이전서류를 폐기한다.</p>	
10. 장비보험배상	<p>본인은 위 정보망서비스이용약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위배되는 경우 정보망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약관이 제제오디기 이전에 등록된 '화'와 '장비(차주)'에게도 적용됩니다.</p>	
11. 세금계산서	<p>회사: 전국24시장비콜 </p> <p>대표 : 박자승 </p> <p>201 년 월 일</p> <p>동의 및 서명 : 신청인 : 전자서명 (인)</p>	

보존기간 : 3년
개정:

전국24시장비콜 정보망 정보망서비스 이용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차주:운전자 자필로 기재 / 소장 : 대표자 자필로 기재)	아 이 디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상 호	핸 드 폰	F A X	
거 래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와의 관계	
차 량 번 호	차량톤수	차량종류	1t, 1.4t, 2.5t, 3.5t, 5t, 8t, 11t, 15t, 18t, 25t
우편물주소			이메일주소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은 정보이용 수수료를 본인의 예치금(가상계좌)에서 지정일자에 자동 인출하는 데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전자서명)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은 선착불수수료 자동정산 서비스규정 및 예치금서비스 규정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은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규정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2	사업자 동의 (사업자 자필로 기재 / 사업자 신분증 첨부)		사업자대표서명(전자서명)
사업자성명	연 락 처		
생 년 월 일			

사업자의 장비를 위탁받아 작업하는 기사에 대한 문제(정보망서비스이용료미납, 운송료, 수수료)와 전국24시장비콜 에 제공한 모든 서류(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로 인한 문제 및 기사대신 배차를 받아서 작업을 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1차적으로 기사가 책임지며 만약 기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퇴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대신 책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업자와 기사가 양자협의하에 약속된 내용이며 꼭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업자 서명(전자서명)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전국24시장비콜 정보망 이용을 위한 고객 등록과 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와 화물실적신고(카고크레인) 및 분쟁처리에 관한 증빙자료 목적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가 있는 자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이용신청서 및 고객등록 서류에 기재된 개인식별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IMEI 전자메일주소, 차량정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 전국24시장비콜 정보망에서의 고객실적정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목적 범위이내
제공할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정보파일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해지시 지체없이 폐기하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는 정보망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며, 거부시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24시장비콜 정보망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귀사가 수집, 이용,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플, 화주프로그램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접속이용 시에 구체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전자서명)
장비(차주) 등록서류(사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화물운송자격증	화주 등록서류(사본)	추선허가증(카고크레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 또는 '장비(차주)'의 등록서류 명의를 다를 경우 모든 분의 신분증을 '사'에게 제출하여야 등록할 수 있다.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물정보망서비스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운송배차요청	1811-8008	정보망서비스 이용료	단일방(무료) 여러방 이용시11,000(부가세포함)
등록문의	1811-8008	예 금 주	전국24시장비콜
정보이용료상담	1811-8008	하나는행	600-910022-98804
팩 스	1811-8098	기업은행	1811-8008-88
비 고		농협	301-0245-4248-91

※ 콜센터 방문 및 팩스로만 등록가능하며 팩스전송 10분후 1811-8008으로 서류접수확인
 ※ 등록시 미완료 서류는 당일 18:00시 이후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폐기처리 됩니다.

전국24시장비콜

대표 : 박자승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전자서명